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한 의견서

- 성명 (단체인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: 사단법인 오픈넷 (대표 : 전용휘)
- 주소 및 전화번호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-9

개 정 안	검 토 의 견	
	수정안	검토사유
<p>제44조(의약품 판매)</p> <p>③ 「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, 전 자정보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인터넷 기반의 통 합정보시스템 운영 자,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사업자, 소프트 웨어 사업자 등(이하 “통신판매중개자등” 이라 한다)은 해당 사이버몰(컴퓨터 등 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 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이나 웹사이트 등 을 통해 의약품이 판 매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</p>	<p>제3항 내지 5항 삭제</p>	<p>□ 법률유보원칙 위반</p> <p>○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,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,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임</p> <p>○ 개정법률안 제44조 제5항의 ‘시정명령’ 발령의 판단기준이 되는 ‘적절한 조치’의 구체적 내용 및 ‘적절한 조치’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인 ‘표현의 자유’ 실현에 관련된 것임.</p> <p>○ 그러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‘시정명령’의 내용 ‘적절한 조치’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행정기관인 ‘식품의약품안전처장’의 자의적 판단에 내맡겨져 있어 표현의 자유</p>

<p>다.</p> <p>④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</p>		<p>라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주요 부분을 행정에 맡기는 결과 초래.</p> <p>○ 따라서 '적절한 조치'의 구체적 내용이나 '시정명령'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모두 행정기관에게 맡긴 당해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.</p> <p>□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인터넷 행정심의 심화</p> <p>○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정보통신망법") 제44조의 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"방송통신위원회법")에 의해서도 이미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불법정보를 심의, 삭제할 수 있음.</p> <p>○ 그러나 당해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식을 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마저 거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총리령에서 정한 시정명령 권한을 직접 가지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행정심의에 의한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보편화될 위험성 존재.</p>
---	--	---

		<p>○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고,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,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.</p> <p>○ 따라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정명령의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행정심의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하며, 독립적인 기구 또는 민간 자율기구에 해당 권한이 이양되어야 함.</p> <p>□ 통신판매중개자 등(이하 “중개자”)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</p> <p>○ 개정법률안 제44조 제3항은 중개자가 "적절한 조치"를 취하지 않으면 식약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임.</p> <p>○ 이 구조에서 중개자에게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, 인</p>
--	--	--

		터넷 생태계에서의 중개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음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